

제339회 임시회
2015. 4. 30.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5. 4. 30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5년 4월 13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4월 22일

-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안 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조운희)

1. 제안사유

○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연수 및 퇴직 공무원 포상에 대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적용범위의 확대(안 제3조)

- 적용범위 추가 : 도의회 의원, 무기계약근로자 등

○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확대(안 제7조)

- 사업 추가 : 5개호→ 8개호

6.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찰
7.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,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
8. 그 밖의 직원 복지·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연수 및 퇴직 공무원 포상에 대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된 내용은 후생복지의 적용범위를 공무원에서 도의회의원,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며,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연수 및 퇴직공무원 포상 등의 후생복지사업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임.
-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재 근거 조례 없이 시행되고 있는 도의회의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제도의 적용,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연수 및 퇴직 공무원 포상이 운영

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

7. 수 정 안 요 지

○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5. 4. 22. / 윤은희 의원

○ 수정이유

- 안 제3조(적용범위)제3항의 “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, 무기계약근로자”의 문구에서 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의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“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”을 삭제하고, 안제7조제6호 중 “국내 시찰”을 “국내·외 시찰”로 수정하여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정책의 취지에 맞게 시찰 지역을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, 국내·외로 범위를 확대하여 장기근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시찰 지역 선택의 범위를 확대 시키고자함.

○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3항에

“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”을 삭제 한다.

- 안 제7조제6호에

“국내시찰”을 “국내·외 시찰” 로 수정한다.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등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1. 수정이유

안 제3조(적용범위)제3항의 “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, 무기계약근로자”의 문구에서 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의 기준의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“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”을 삭제하고, 안제7조제6호 중 “국내 시찰”을 “국내·외 시찰”로 수정하여 장기 근속한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정책의 취지에 맞게 시찰 지역을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, 국내·외로 범위를 확대하여 장기근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시찰 지역 선택의 범위를 확대 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개정안 제3조제3항의

“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”을 삭제 한다.

- 개정안 제7조제6호중

“국내 시찰”을 “국내·외 시찰”로 수정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3항를 다음과 같이한다.

- ③ 도지사는 도의회 의원,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

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.

6.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.외 시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</p> <p>① ~ ② 생략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적용범위)</p> <p>① ~ ② 생략</p> <p>③ <u>도지사는 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,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	<p>개정안과 같음</p> <p>① ~ ② 생략</p> <p>③ <u>도지사는 도의회 의원,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생략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생략</p> <p>6. <u>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찰</u></p> <p>7. <u>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,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</u></p> <p>8. <u>그 밖의 직원 복지·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</u></p>	<p>개정안과 같음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개정안과 같음.</p> <p>6. <u>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·외 시찰</u></p> <p>개정안과 같음</p> <p>개정안과 같음</p>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4월 1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연수 및 퇴직 공무원 포상에 대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의 확대(안 제3조)
 - 적용범위 추가 :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, 무기계약근로자 등
-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확대(안 제7조)
 - 사업 추가 : 5개호→ 8개호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,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

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에 다음 각 호를 신설한다.

6.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찰
7.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,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
8. 그 밖의 직원 복지·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범위를 확대하여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을 지급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20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연수 비용 발생
-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(공무원)에 대하여 상패 및 부상품 구입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
 - 6호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찰
 - 7호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,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안 제7조 6호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찰 :
근속 20년 도래자 및 해당연도 연수 미실시 장기근속 공무원 매년 276명 연수 실시 추정(예산 범위 안에서 실시)
- 안 제7조 7호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,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
격려금품 지급 : 20년 장기재직자 퇴직건수 60건 추정

나. 추계 결과 : '15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,605백만원 정도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 원)

구분	계	1차년도 (2015년)	2차년도 (2016년)	3차년도 (2017년)	4차년도 (2018년)	5차년도 (2019년)
세 출	1,605,000	321,000	321,000	321,000	321,000	321,000
장기근속 선진지 연수	1,380,000	276,000	276,000	276,000	276,000	276,000
퇴직공무원 격려금품 (상패, 부상품)	225,000	45,000	45,000	45,000	45,000	45,000

- ※ 총무과, 활력일터 조성을 통한 공직역량 강화, 민선6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, 직원사기진작사업, 포상금
- ※ 총무과, 활력일터 조성을 통한 공직역량 강화, 능력과 성과중심의 창의적인 공직문화 정착, 퇴직자 관련 지원, 포상금

6. 작성자 : 안전행정국 총무과장 정연철